



경 기 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」 공포 알림

1. 소방청 위험물안전과-704(2024.1.31.)호 관련입니다.
2.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제20160호)」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포일/시행일 : 2024.1.30. / 2024.7.31.

나. 개정이유 :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
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

다. 개정내용

- 제조소등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(제19조의2제1항)
- 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의무(제19조의2제2항)
-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보완명령 등(제19조의2제3항)
- 흡연구역 지정기준,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위임규정(제19조의2제4항)
-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(제39조제1항제7호의3)
- 금연 알림표지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(제39조제1항제7호의4)

※ 개정법률 위임사항 신설을 위한 영·규칙 개정 진행중

붙임 1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2. 위험물안전관리법(2024.1.30.개정) 1부. 끝.

경 기 도 자 사



수신자 소방서(24개 재난예방과), 24개 소방안전특별점검단

소방교

송광심

위험물 안전팀

장

김현호

재난예방과장

전결 2024. 2. 8.

박태원

협조자

시행 재난예방과-2641

(2024. 2. 8.)

접수

소방안전특별점검단-1839

(2024. 2. 8.)

우 16550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, 별관 재난예방과 (권선동)

/ <https://119.gg.go.kr>

전화번호 031-230-2893

팩스번호 031-280-8501

/ ihansim@gg.go.kr

/ 대국민 공개

문서 한 장을 인쇄할 때 이산화탄소 5g이 발생합니다